

2009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일 시 : 2009. 8. 20(목) ~ 21(금)

장 소 : 대 전 유 성 호 텔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언론학회

2009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일 시 : 2009. 8. 20(목) ~ 21(금)

장 소 : 대 전 유 성 호 텔

주 최 :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학회



위 원 장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성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정기 세미나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학 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언론학회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도 2011년에 설립 3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의 성공적인 모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언론학회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여, 상호교류와 발전의 장을 펼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공동개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언론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미나를 위해 긴 시간 이동하느라 힘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아직 한낮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취재보도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서울과 지역의 언론사 데스크 여러분과 포털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개정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특징은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배포하는 뉴스도 조정·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아 언론사나 포털사 관계자 여러분이 조정·중재 실무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주제를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의 책임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서울제1중재부장으로 계신 여상원 부장판사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는데, 개정 언론중재법을 시행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질문도 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이며, 순천향대학교 장호순 교수님께서 발표하십니다. 대법원 판례를 모아 분석한 것이므로 언론 현업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두 주제는 모두 언론분쟁 해결과 관계되는 것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개정 언론중재법이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아울러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설정하는 데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여상원 부장판사님과 장호순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실 대전중재부장 어수용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20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권 성

— 목 차 —

제1주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11
---	----

제2주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29
--	----

토 론	49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5
----------------------------	----

- 이 책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 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발제자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어 수 용 대전중재부장 / 대전지법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

권 성 위원장 / 인하대 로스쿨 원장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노 향 기 부위원장 / 전)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안 병 준 서울제1중재부 위원 / 전) 내일신문 편집국장
박 영 규 서울제1중재부 위원 / 전) 연합뉴스 심의실장
윤 상 일 서울제1중재부 위원 / 변호사
임 경 록 서울제6중재부 위원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정 결 진 대구중재부 위원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 인 준 대전중재부 위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위원 /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 용 석 경기중재부장 /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 광 재 경기중재부 위원 /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박 석 태 경기중재부 위원 /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안 종 배 경기중재부 위원 /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최 재 정 경기중재부 위원 / 변호사
한 진 만 강원중재부 위원 /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효 성 충북중재부 위원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 범 서 전북중재부 위원 / 전) 전북중앙신문 편집국장
김 창 룡 경남중재부 위원 /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김 남 석 경남중재부 위원 / 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김 용 주 사무총장
장 원 상 연구본부 본부장
심 영 진 정책연구팀장
권 오 근 홍보팀장
양 재 규 조사팀장
구 율 화 법무상담팀장
김 문 성 대전사무소장
여 종 국 정책연구팀 차장
김 주 용 정책연구팀 차장
최 명 진 정책연구팀
이 진 아 조사팀

한국언론학회

최 양 호 부회장 /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재 진 연구이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 동 훈 이사 /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 형 곤 이사 /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 성 복 이사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특임교수
유 승 현 사무국장
이 강 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상 호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 재 웅 을지대 의료홍보디자인학과 교수
홍 종 배 전파진흥원 연구원
김 봉 철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용 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사

김 재 익 경남신문 사회부장
황 국 성 매일경제 편집국 부장
손 석 구 서울신문 고충처리인 / 부장
양 창 호 아시아경제 온라인총괄본부 실장
임 형 두 연합뉴스 논설위원
이 희 성 전자신문 뉴스팀장
김 상 우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양 용 철 KBS 영상취재팀 차장
양 민 오 KBS대전총국 보도국 기자
유 종 현 MBC 영상취재팀 부장
전 영 식 TJB 제작팀장
박 준 석 Daum 고객센터기획팀장
이 현 재 Daum 대외협력실 대리
이 재 형 Daum 미디어사업팀 차장
김 은 실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뉴스파트장
한 인 숙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대리
김 현 성 NHN 법무실장
노 은 정 NHN 뉴스서비스팀 차장
이 준 택 SK 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서비스팀장
백 선 기 SK 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장
박 수 진 SK 커뮤니케이션즈 대외협력팀 대리
성 동 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 참석자 총원 : 67명

제1주제 / 언론중재위원회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¹⁾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여 상 원

(서울제1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 머리말

당초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70호 2005. 1. 27 제정,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고만 한다)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 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 어 2009. 8. 7.부터 시행된 신 언론중재법에서는 나아가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 다. 이는 포털²⁾이 기사제공언론사³⁾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기사제공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 등 기사를 포털에 게시하거나 포털에서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기사로 연결되게 하거나 포 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기사를 불러내어 포털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사제 공언론사 자체의 뉴스 제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농

1) 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 의하고 있다.

2) 포털(portal)은 사전적 의미로는 현관문을 뜻하는데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을 시작하는 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포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원래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검색기능을 넘어 포털 자체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 장 보편적인 포털로는 네이버와 다음이 있다.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또는 웹 포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www)에서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한편, 위키백과사전에서는 포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포털 사이 트들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 또는 그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 위주였으나 점차적으로 전 자 메일, 홈쇼핑, 블로그 등 다양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야후!는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포털 사이트는 수평 포털과 수직 포털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 포털은 야후!처럼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수직 포털은 특정 영역에 치중한다.” 2007. 말 현재 국내에는 27개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사이트도 19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국회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09. 1.))

3) 신 언론중재법 제2조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후하고 이에 대한 구제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개정된 것이다.⁴⁾

생각건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고자 하는 신 언론중재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 제17조의 2⁵⁾의 조문 하나만 됴으로써 이론상, 실무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어 신 언론중재법에 대한 검토와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까지 신 언론중재법 중 이 부분을 운용하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현행 민사소송법의 원리 등을 동원하여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절차법상의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종전 규정대로 각별로 제기된 정정보도 등 청구에 의하여 별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즉, 신청인은 새로운 언론중재법 하에서도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또는 각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⁶⁾

나.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법상의 지위⁷⁾

그런데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에

4) 신 언론중재법안에 대한 위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포털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각각 1,000만 명을 넘는 등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입법이유로 들고 있어 결국 포털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어 포털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경우 여론왜곡 등의 문제가 있어 신 언론중재법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 검토보고서.

5)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6)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를 준용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사건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으로써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와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7) 오프라인 언론사가 설립한 언론사닷컴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도 그 법원리는 포털을 상대방으로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포털과 언론사닷컴을 통칭하여 편의상 뉴스서비스사업자라 한다.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 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 부분이 절차법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신 언론중재법상의 이 부분 규정은 민사소송법이나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에도 없는 특유한 것이고 이에 관한 선례도 없어 상당 기간 동안 그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 민사소송법 소송고지와 비교

민사소송법 제84조⁹⁾ 내지 제86조는 소송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송고지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목적은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¹⁰⁾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언론중재법상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의 공통점은 소송이나 정정보도 등 청구 시에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송이나 청구가 접수되어 절차가 개시된 연후에 고지나 통보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고지의 주체는 법원이다. 즉,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을 뿐 당사자 본인이 소송고지를 할 수 없다. 반면 언론중재법 상 통보는 뉴스서비스사업자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당사자의 권한일 뿐 원칙적으로 의무 조항이 아니다.¹¹⁾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통보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다. 셋째, 민사소송법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자에게는 기판력이 아니라 참가적 효력¹²⁾이 미칠 뿐이다. 언론중재법상 통보에 의하여 정정보도 등 사건에 관여하게 된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기사제공언론사도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대부분의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그대로 실는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

8)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4조 제3항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10)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328쪽.

11) 민사집행법 제238조, 상법 제404조는 소송고지를 강제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고지는 강제되지 않는다.

12) 참가적 효력은 기판력이 아니고 피참가인(원래의 당사자)이 패소한 경우 소송고지를 받은 자와 원래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1979. 6. 12. 선고 79다 487 판결 참조.

면 조정이나 중재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보는, 즉 기사제공언론사에게도 조정결정의 당사자로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라.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통보절차에 관한 문제와 또 통보가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만 조정결정 등이 행해진 경우 그 결정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이 문제가 된다.

우선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통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이나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단은 없다. 이 부분이 새로운 언론중재법 입법상의 실수가 아닌가 한다. 즉, 포털과 기사제공언론사의 관계 및 기사 내용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신청인의 청구목적이 달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면 자동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신 언론중재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태도와 관계 없이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에 끌어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통보 여부를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재부가 통보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결국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제도를 유추하여 통보절차를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중재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언론중재법 하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중재부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기사제공언론사도 공동 피신청인으로 할 것을 지도하거나 이미 뉴스서비스사업자만 피신청인으로 한 사건이 접수되었으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새로운 신청을 하게 한 다음 민사조정법 제14조의 2를 준용하여 2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결책은 언론중재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조정법에 따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사조정법 제16조는 제1항에서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사제공언론사가 어떤 경로로든지 자신이 제공한 기사에 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

음을 안 때에는 중재부에 조정참가신청을 하고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여할 수 있고,¹³⁾ 기사제공언론사가 스스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부가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¹⁴⁾ 참여시켜 조정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민사조정법을 준용하여 기사제공언론사를 조정절차 등에 참여시키더라도 언론중재법상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통보에 의하여 부여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¹⁵⁾ 필자는 통보절차에 관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으면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사제공언론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통보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마.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조정결정 등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효력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게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상 기사제공언론사를 정정청구 등의 당사자로 취급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조정절차 등에 스스로 참가하여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조정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에 따라 의무를 부담함도 당연하다.

반면에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통보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또는 중재부의 명령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하지도 않아 기사제공언론사가 조정절차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정결정에 기사제공언론사가 효력을 받는 것은 민사절차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신청인이 기사제공언론사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제쳐 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포털에 실린 기사가 정정되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원천기사의 정정을 원하면 다시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

13)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의하여 조정에 참가한 경우를 관여라고 한 것은 민사조정법의 표현과 같이 이러한 참가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있어 정정보도 등 청구에 있어서도 당사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 기사제공언론사가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상당성”은 거의 인정될 것이다.

15) 그러나 조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제공언론사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절차법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조정결정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도 등의 청구를 하여 신청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통보 없이 신청인과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에 조정이 확정되어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천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민사절차상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모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도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의 언론중재 절차상 지위

위에서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을 보았는데 통보를 한 경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통보를 한 경우 기사제공언론사도 피신청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입법이 과연 현대 민사절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사제공언론사는 놔두고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불만이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삼겠다는데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한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기사제공언론사로 하여금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과연 법원리에 합당한 것인지는 심히 의문이다. 이것은 신청인이 정정보도 등 청구 당시부터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모두 상대방으로 한 것과 뉴스서비스사업자만 상대방으로 한 것과 아무런 차이를 없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다. 즉,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¹⁶⁾ 것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통보만 하면 기사제공언론사가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의하여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 심리에 참석하여야 할 자는 누구인가.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2항에서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

16) 이것은 뒤에서 언급하는 해결책인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추가신청권을 부여하는 것과 어긋난다.

음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기사제공언론사도 신청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둔 것에서 기사제공언론사는 비록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피신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중재부의 심리에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 모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기일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아니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좋을 것이다.

한쪽이 출석하고 다른 쪽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결정이 모순이 없지만 출석한 피신청인과 사이에 당초의 청구와 다르게 조정이 이루어지고 양자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예컨대, 불출석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애초의 청구취지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출석한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절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만으로 조정이 된 경우일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양 피신청인에 대하여 필수적 공동 피신청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정결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다른 절차를 통하여 불일치를 해결하여야 하고 결국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가야 할 것이다.

아. 입법론적 검토 :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¹⁷⁾과의 비교 및 도입 검토¹⁸⁾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가 도입된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원천기사와 포털에 실린 기사는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의 절차에서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불고불리의 원칙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 포털에서 정정된 기사와 원천기사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의무를 부과하고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 역시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단순히 피신청인의 지위에 두도록 하는 것

1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공동이 법률상 강제되고 또 共同訴訟人 모두에게 合一確定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말한다. 법원 실무제요 민사소송 1권 284쪽.

18)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필자가 가장 고심한 테마이다. 즉, 신청인으로서 뉴스서비스사업자나 기사제공언론사만 피신청인으로 하고 싶은데 법에서 양쪽 다 피신청인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필수적 공동소송 제도를 두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에 불과하고 조정결정 등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즉,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면) 굳이 신 언론중재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만 하여도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되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를 민사소송법상 필수적(적어도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로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¹⁹⁾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각 가지 민사절차법상의 문제점이 일거에 해결된다(다만, 여기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둔다고 하여 각자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이 완전하게 같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조정결정의 전체적인 취지가 같다면 피신청인들의 기사 게재 방식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언론중재법에서 포털에 실린 기사와 원천기사는 항상 동일하게 취급됨을 선언하고 (이러한 선언은 현실과도 부합된다. 신청인의 신청목적은 포털에 실린 기사는 물론 원천기사도 동일하게 정정되어야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필수적으로 공동피신청인 관계에 있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접수 시 기사제공언론사도 동시에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알려주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업무착오 등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중재부에 피신청인의 추가를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게 한다(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본문). 만일 신청인이 이와 같은 중재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제공언론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필자가 지적하듯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 언론중재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피신청인을 다수로 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면이 적다는 점에서(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다수가 되

19) 2008년도 중재위원 워크숍에서 조수정 전 위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은 법적 성질에 반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조정결론과 기사제공언론사에 대한 조정결론이 정반대로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신 언론중재법이 원래 추구하였던 입법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법적 성질에 반한다는 것은 아마 민사소송법의 법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학설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범위를 소송상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제5판 197쪽 참조) 오히려 포털의 기사와 원천 기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목적이고 또 자연스런 것임을 감안하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지위를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지만 언론중재에서는 이런 면도 없다.) 고려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원고(언론중재법상의 신청인)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누누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재판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면에서도 신 언론중재법이 기사제공언론사에 필수적 공동소송인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비록 조문상으로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추가에 관하여는 권한도 된다)을 부여한 것은 법체계상으로 크나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필수적 공동 당사자가 되는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에 동일하게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자.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

위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만을 언급하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법적 문제를 보기로 하자.

언론중재법은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추측하여 보면 기사제공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 청구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 사이의 기사제공 계약²⁰⁾상 당연히 포털에 실린 기사의 정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통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 해결책이 규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²¹⁾

그 해결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뉴스서비스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등이 청구되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기사제공언론사만 상대방으로 한 정정보도 등이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재부에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게 하고 중재부의 허가에 의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도 피신청인으로 삼는 방법이 가장 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 필자가 그 계약서를 구하여 보려고 공적, 사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추측에 의한 글을 써 안타깝다.

21)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록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와 맺은 계약에 원천기사에 정정보도 등을 명하는 조정결정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포털에 실린 기사도 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는 기사제공언론사와 사이의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기사제공언론사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직접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정정보도 등 신청이 절실하다.

3.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실체법상 지위

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의 의무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하 알림표시라고 한다)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기사제공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것은 조정결정 등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의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²²⁾에 유사한 제도로 보인다. 원래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과 같은 현상을 작출하게 되므로 그 심리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치고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소명(疎明)²³⁾을 요하는 데 반하여 신 언론중재법 상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민사집행법상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도의 현상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심리나 소명 없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위에서 본 의무를 명하고 있는데서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notice and take down”²⁴⁾ 의무까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²⁵⁾(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와 유사한 개념이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

22)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8쪽.

23) 소명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입증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4권 75쪽.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

은 자(언론중재법상 신청인에 해당한다)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명하고 있는데 그쳐 언론중재법의 규정만을 놓고 볼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take down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take down을 명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정하고 또한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통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보다 법익의 침해가 당사자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 삭제의무까지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상의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일률적으로 삭제의무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그 보도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등 청구로 갈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기사의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아무리 언론보도로 사생활 침해 등을 입었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삭제 등을 구할 수 없고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기사를 삭제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닌 당사자 간의 임의적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논외로 한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고자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하였는데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등의 청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삭제하였을 경우 그 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이 병합청구되었을 경우에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스스로 그 기사를 내렸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정정보도 등 담당 재판부가 이러한

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영역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을 이유로 신청인을 설득하여 손해배상을 포기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비법률적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나.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의무의 구체적 내용

(1) 뉴스서비스사업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고도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에서 아무런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과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지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삭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고 다만 제44조의 2 제6항에서 삭제 등 의무를 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하여 소극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 체제를 보면 결국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알리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자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서는 심리결과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피해 회복 등이 시급하다면 이에 대한 벌칙을 두거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두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을 강제할 법률적인 수단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리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21조²⁶⁾, 제42조²⁷⁾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민사조정법 제21조는 알리표시 의무의

26) 민사조정법 제21조 (조정 전의 처분)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현장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함에는 처분위반에 대한 제42조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않는다.

27) 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전의 처분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행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주로 소극적인 금지만 정하고 있어 과연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조정실무는 민사조정법의 위 규정을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어²⁸⁾ 이를 유추하여 보면 중재부는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알립표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사전처분으로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민사조정법은 중재부가 이러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정신청 후 그 종료전, 즉 조정 사건이 계속 중에만 인정하고, 일반 보전처분과 달리 조정신청 전에는 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 없이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재부가 이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인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과태료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²⁹⁾ 비록 언론중재법이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벌칙조항까지 준용한다는 것은 광의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3) 알립 표시의무의 이행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여부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해당 기사에 표시하는 알립표시 의무의 방법이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일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알립표시를 일반인이 거의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그 의무 이행을 다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중재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아니면 중재부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줄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론중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조정법의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재부는 알립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11.30

28) 실무제요 조정실무 89쪽.

29)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원용하여 그 의무이행의 내용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부는 신청인이 알림표시에 관한 신청을 할 때 동시에 그 방법에 관하여도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의견과 중재부의 견해를 토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림표시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알림표시에 의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와 구제

정당한 기사에 대하여 알림표시가 행하여짐으로써 뉴스서비스사업자는 포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발생 가능성은 모든 분쟁구제 절차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히 정정보도 등 사건에서 특유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알림표시가 그 기사를 단정적으로 허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로 행하여지는 것을 알림표시에 부가하여 알림표시 옆에 “이 기사에 대하여 …로부터 정정보도 청구 등 신청이 제기되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를 알립니다. 그러나 이는 이 기사에 확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고 언론중재위의 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입니다.”는 정도의 문구를 부가하여 두면 뉴스서비스사업자의 피해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신청인의 신청이 오로지 뉴스서비스사업자를 괴롭힐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조정결정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후에 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의한 피해구제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조치로 인하여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손해를 볼 경우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알림표시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5) 오프라인 매체와의 형평성

현재 오프라인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과 같은 알림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일한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유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알림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오프라인 매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의 특성상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오프라인 매체는 시간적 지속성이 결여되어 시간이 지난 보도에 소급하여 알림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정정보도 등 본안에 관한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기술적으로도 이미 지나간 기사에 알림표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는 그 매체에 기사가 실린 후 이를 인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을 경우 알림표시를 하여야 오보 등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의 위 조항은 그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은 별도의 뉴스 공간을 만들어 뉴스제목을 열거하고 있고 사이트 이용자가 게시된 뉴스 중 원하는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그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뉴스페이지를 별도로 두지 않고 검색란에 관심 있는 항목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기사제공 언론사 홈페이지의 해당 뉴스에 바로 링크되어 비로소 뉴스가 제공되는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³⁰⁾ 이러한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 청구를 받았을 경우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의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음을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즉, 뉴스서비스사업자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뉴스가 저장되어 있다면 별도의 뉴스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의 해당 뉴스에 알림표시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기사제공언론사의 해당 뉴스에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다면 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는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기사제공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후 당해 기사제공언론사가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기사를 내리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어서³¹⁾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라. 여론 -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약간의 고찰

우리 언론중재법은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기사제공언론사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정보도 등 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이지 다른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기사제공언론사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계약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가감 없이 게재하여야 하는데 기사작성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뉴

30) 필자가 인터넷 포털을 다수 방문하여 봤으나 이러한 곳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털이 있음을 가정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31)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 제1항은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알림표시 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스서비스사업자가 그 기사의 오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물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하면 잘못된 기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제공에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따로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를 기사제공언론사에 적용하는 것은 기사제공언론사가 기사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 기사가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옮겨 신는데 불과한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같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여기에서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허위 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사를 게재하였을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어떤가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는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고 그들 사이의 책임분담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작금의 증대한 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근대 민법의 자기책임원칙이나 과실책임원칙에 의하여 자신의 잘못에 비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입법적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면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4. 결 어

신 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에 관하여 참고 문헌이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필자의 미약한 법률지식과 그 동안의 재판경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다. 쓰고 보니 너무 엉성한 점이 많아 언론중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 그러나 이 글을 계기로 위 조문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는 의미에서 용감하게 썼다. 결국, 신 언론중재법의 이 조문은 좀 더 연구가 행하여져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제2주제 / 한국언론학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으로부터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그 법률적 구제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¹⁾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등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표현의 삭제, 접근차단, 취급거부, 정지, 이용제한 등을 통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소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건수 모두에 대한 공식적 집계는 없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08년 발행한 <언론소송 판결분석>에 수록된 판례수를 보면,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는 표현도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검찰은 소위 <미네르바>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로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도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

[표1] <언론소송 판결분석>에 수록된 판례수

(단위 : 건수)

연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계
2005	71 (85.5%)	12 (14.5%)	83 (100%)
2006	81 (74.3%)	28 (25.7%)	109 (100%)
2007	116 (73.9%)	41 (26.1%)	157 (100%)

출처: <언론소송 판결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21쪽.

<언론소송 판결 분석>에 모든 민형사상의 언론관계 소송이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수치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형사처벌 보다는 민사상의 배상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이 많은 이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허위사실 적시, 피해자의 특정, 피해자 명예의 훼손, 사실과 의견 구분 등에 있어 민형사상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소송 판결 분석>에 따르면, 형사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민사상의 패소판결에 비해 높긴 하지만,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5년-2007년 사이 유죄가 선고된 72건의 언론관련 소송에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소위 <PD수첩>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났듯이, 언론매체나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리적 현황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형사사건 중,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명예훼손에 있어 형사법상 처벌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위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으로서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 처벌을 가능케 하는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기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민사재판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로 명예훼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²⁾ 반면 형법조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와 처벌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형법은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 제309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307조의 일반적 명예훼손과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고, 대신 그 처벌은 일반적 명예훼손보다 엄중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매체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 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라는 이유로 설명했다.³⁾

한편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친고죄(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는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만 공소가 기각된다.

현행 형법조항은 명예훼손죄가 과도하게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310조에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 조각사유는 일반적 명예훼손에 적용될 뿐,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다.⁴⁾ 반면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민법상의 소송에서도 인정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고 있다.⁵⁾

2)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5)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경우, 진실의 입증은 가해자인 표현행위자나 언론매체에게 주어진다.⁶⁾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그러한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거듭 확인한 바 있다.⁷⁾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⁸⁾

3. 명예훼손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비판론

최근 검찰은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담당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위 <미네르바>라고 불린 인터넷 논객이 전기통신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두 사건에 즈음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수사 즉,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술적 논의는 많지도 않고, 그 대부분이 총론적으로 형사처벌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민형사상의 법리적 차이점이나 형사처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법리적 쟁점을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죄 처벌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

6)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공인인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원고에게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도록 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7)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의원들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역신문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반발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기각했다.⁹⁾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명예훼손 관련법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고 설명했다.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 보호 쪽에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서 결국 이러한 “언론 자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의 처벌에 있어서 지켜야 할 3가지 헌법적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공 1993하, 2188 ; 1994. 8. 26. 94도237, 공 1994하, 2572. 각 참조).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핵심취지는 과도한 처벌로 인한 언론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일반 명예훼손죄나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입증을 엄격히 해서 법의 남용을 막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법학자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부터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석연은 이미 1992년도의 논문에서 “명예침해의 경우 형벌권 개입은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축소하

9) 헌재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작용은 특히 권력형 비리나 대형 부정부패 의혹사건 보도에 대한 무형의 사전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¹⁰⁾

신평 역시 “표현의 영역에서 가능하면 법의 힘은 제한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론기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추상적 위험범”으로 명백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보았다. 미국과 같이 “현실적 악의” 이론을 수용해 면책의 범위를 넓히고, 고의범이나 중과실범에 한해서만 형법상의 처벌을 제한하자고 그는 제안했다.¹¹⁾

1999년 대전 문화방송이 보도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2003년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보도한 언론인들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와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승선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법조의 구조적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성이 있고, 보도의 상당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¹²⁾

명예훼손죄로 인한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최근 <PD수첩>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을 둘러싸고 또 다시 제기되었다. 박경신은 명예훼손죄를 통해 “권력자는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검찰을 동원하여 자신의 비판자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권이 남용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한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이에 대해 정부부처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존속되려면 사법부가 검찰의 기소권이나 조사권을 엄정한 영장주의 하에 통제하거나, 공직자나 국가기관에게는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김종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2006도 7915)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기소당한 피고의 무죄입증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더욱 언론자유를 위축한다고 주장한다. 즉 표현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고, 검사는 그 점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형사소송에서 이처럼 범죄의 증명을 해야 할 검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¹⁴⁾

10) 이석연,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리와 적용,” <언론중재>, 1992년 겨울호.

11)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년.

12) 이승선,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17-3, 161-196.

13)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언론중재>, 2009년 여름호, 46-61.

14) 김종서,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대응과 언론자유,” <언론중재>, 2009년 여름호, 30-45.

일부 학자들은 언론자유 위축 측면보다는 형사처벌이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서의 법적 효율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김동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켜줄 뿐, 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 회복 등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⁵⁾

손동권은 명예훼손 처벌이 “다소나마 피해감정을 보상받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민사소송과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 즉 진실성과 공공성의 입증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어 … 비록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의 원칙, 거증책임 검사 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동권은 “독일의 형법과 같이 사실의 증명만으로 면책되거나 일본 형법과 같이 공직자에 한하여 사실증명만으로 면책되는 제도의 입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¹⁶⁾

지금까지 명예훼손에 관한 대부분의 학술적 연구는 민사소송의 법리와 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도 형사처벌의 당위성이나 효율성,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만 적용되는 “비방할 목적”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 중 “비방할 목적”이 쟁점이 되어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분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언론을 상대로한 형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위반행위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수집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총 81건의 형사소송에서 128개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이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언론사는 69개사로 그 비율은 53.4%였다. 판결결과를 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언론사의 75.4%에 달

15)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 5-38.

16) 손동권,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87-103.

하는 52개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제소된 320건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건수는 139건으로 승소율은 43.4%였다.¹⁷⁾

[표2] 언론상대 형사소송의 위반 죄명 및 처리결과

(2005년-2007년)

죄 명	유 죄	무 죄	공소기각	합 계(%)
명예훼손	12	4		16(12.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2	15	2	69(53.9)
정보통신망법위반	9	9	2	20(15.6)
공직선거법 위반	12			12(9.4)
기 타	8		3	11(8.6)
합 계	128			128(100)

출처: <언론소송 판결 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61, 64쪽.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추출하고, 그 중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단한 판결을 검색한 결과, 198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8건이 검색되었다.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이 8건, 무죄가 확정되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10건이었다.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과 확인방법이 제시된 사건은 11건, 그 기준과 확인방법의 제시 없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만을 제시한 판결이 7건이었다.

[표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83년 이후)

	유죄확정 혹은 유죄취지 파기환송	무죄확정 혹은 무죄취지 파기환송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된 사건	3건	8건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건	5건	2건

17) <언론소송 판결 분석>, 2008년, 언론중재위원회, 40쪽.

1)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된 사건

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유죄판결

대법원은 문제가 된 발언이나 표현이 허위일 경우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법원은 2002년 정부고위층의 압력으로 부당하게 감사가 중단된 것을 폭로한 감사원 직원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비방할 목적”에 대한 입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사원 직원들의 내부토론을 거쳐 감사를 중단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감사가 중단된 것처럼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상급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¹⁸⁾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판기사를 이용해 광고와 구독을 요구한 지역주간신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000도329 판결에서와 같이 제시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목적의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재언급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그 기준이 개별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은 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판물

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¹⁹⁾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둘러싼 분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공익성”을 추가로 적용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검토 없이, “피고인이 기사를 제보하게 된 경위와 그 제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²⁰⁾

위 3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위의 세 판결에서는 과연 대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지를 판단케 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처벌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한 고민이나 우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 무죄판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더불어 공익성도 적극 채택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사실상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한겨레신문이 한 학생운동 지도자의 사망에 안기부 직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기사로 인해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신문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보도될 당시 정부수사기관과 학생운동권 간의 긴장형성 등 피해자들이 “관여된 듯한 강한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여러 사정이 있었고,” 기사의 목적이 당시 변사사건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던 “여러 의문점을 취재하여 이를

19)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2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독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²¹⁾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사실상 위법성 조각사유 판정과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유인물로 인한 1998년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에서 대법원은 보다 구체적인 “비방할 목적” 확인 방법을 제시했다. 진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했다. 공익과 비방목적과의 관계도 분명히 정립했다. 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성 표현이 공익성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동기도 상대방 후보자의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비방할 목적을 부인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상대후보에 대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지만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²²⁾

2000년의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의 공익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표현은 시장과 마찰을 빚고 해직된 문화원장 관련 기사에서 시장을 “친 일매국자”로 비판한 기사였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 및 시민의 날 개정 등의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²³⁾

대법원은 한 교회의 목사의 성경해석이 이단이라고 비판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월간잡지 발행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교리해석을 기성 기독교 신자 등에게 널리 알려 이를 경계케 함으로써 기존의 교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22)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²⁴⁾ 그러나 표현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간부가 언론인터뷰에서 한 청소대행업체가 특정업체의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비난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원심에서는 해당업체의 군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방해하고, 해당업체 퇴사직원들이 새로 설립한 업체와의 계약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례판결에서 제시한 비방목적 판단기준을 재언급하면서 원심판결이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노조간부가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하려고 한 것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린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대량 실직을 하게 되어 화천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화천군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기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 비방목적의 부인요건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동일한 것으로, 결국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대법원은 재확인 한 것이다.²⁵⁾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해 고발당한 여성단체에 대해 대법원은 그 행위가 공익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졌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인 사실, 이와 같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스스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사실,”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진실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있을 뿐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어서 명예의 훼손정도가 심각하다는 점까지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

24)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1803 판결

25)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별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비방할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²⁶⁾

2007년 대법원은 당시 농림부장관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축협회장은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유통·판매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었다. 원심은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공익성과 비방목적이 상호부인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익성과 진실성 판단여부에 있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²⁷⁾

위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광고 내용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 및 판매의 권장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미 언론도 사실을 통해 밝힌 공적 관심사안이며,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 ‘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이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광고를 비방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비방의 목적’ 혹은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서도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과

26)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7)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사안임을 확인해 주었다.

2008년 대법원은 콘도사업 특혜분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고위층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는 양심선언으로 피소된 감사원 직원에 대한 두 번째 판결에서 종전의 판결과는 상이한 판결을 내렸다.²⁸⁾ 대법원은 종전판결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공표해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었다.²⁹⁾ 그러나 새로운 판결에서 대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효산그룹사건에 대한 감사중단 및 외압 의혹은 피고인의 양심선언 이전부터 언론매체에 의하여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동안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힌 것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양심선언은 이와 같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공표한 행위는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정에 존재하는 의혹을 규명하고 헌법상 독립적·중립적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제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이 적용되면서, 종전의 유죄판결이 무죄판결로 바뀐 것이다.

2)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판결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심판한 18건의 판결 중, 7건에서 대법원은 그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판결결과만 제시했다.

28)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9)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유죄판결

문중 내 분규로 발생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방 목적의 구성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이씨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귀감으로 하려는 “광리세적”에 개인적 명예손상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적어 넣어 그 종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내용의 진위여부나 공익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³⁰⁾

한 월간지가 1969년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1980년 광주항쟁 관련 사진으로 오인하여 게재한 사건에서,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사진 속 주인공들이 마치 특전사령부 광주항쟁 진압요원으로 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피고에게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³¹⁾

대법원은 화랑과의 마찰을 빚은 화가가 언론사에 화랑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보도된 후 피소된 1994년 사건에서, 원심대로 피해자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했다며 유죄를 확정하였다. 피고는 제보의 목적에 대해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고의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 “다시는 화랑이 작가에게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가 화랑대표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심판결을 수용했다.³²⁾

대학분규의 한 당사자가 대학교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주상복합아파트(스타시티)의 건설을 통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신문광고에 게재해 원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제시 없이,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³³⁾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에 관련되어 재판을 받는 군수에 대해 보도한 지역신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 적도 있다. 해당 신문은 재판 중 핵심증인이 군수와의 성관계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군수가 정정보도요청을 하자 다음날 “김 군수라고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정정보도를 냈고, 그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0) 대법원 1983.6.14. 선고 82도744 판결

31)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1744 판결

3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3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손 혐의로 피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도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속한 신문사의 광고협찬과 연구용역 수주를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³⁴⁾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할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피고의 주관적 해석을 증인의 증언내용인 것처럼 오인 되도록 표현했기에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해당 신문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서 그를 통한 보도는 불특정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³⁵⁾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점검 없이 “비방의 목적을 둘러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³⁶⁾

나.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 무죄판결

시민단체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조선일보 기사를 근거로 제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시민단체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조선일보 기자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の内容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익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³⁷⁾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종교잡지에 대한 기소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간략히 판결했는데, 진실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검토 없이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 “형법 제 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선례만을 인용하면서, 해당 잡지가 종교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34) 전주지방법원 2006. 1. 26. 2005고단 1203 판결

35) 전주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6노195 판결

3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37)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확정했다.³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를 심판한 18건의 대법원 판례 분석결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권력자에 의해 남용될 소지를 축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판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18건의 분석대상 판례 중 7건에서 유죄판단의 성립조건이 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혹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11건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한 원칙은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으로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형법 307조의 일반적 명예훼손죄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소송에 적용되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도 그 실질적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언론자유에 과도한 위축이나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의 입증기준으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선례에서 언급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표현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검찰 기소의 적절성이나 법원판결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한 언론자유에 위축과 권력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유죄성립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입증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적시 사실의 내용의 성질”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강도나 오류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에 있어서는 해당인물의 공인여부나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인에 대해 적용하는 “현실적 악의” 기준, 즉 “허위를 인지하고도 그것을 무시한 채 표현하거나 진실파악을 위한 노력을 무모할 정도로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3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으로 적용하는 것도 유죄성립 조건을 명확히 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기소가 남발되거나 고의적인 비방을 통한 명예훼손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결에서,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진실성/상당성과 공익성을 적용함으로써 형사처벌로 인한 언론자유의 위축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다. 비록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사항이 대법원에 의해 수용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핵심 성립 조건인 “비방할 목적”을 판별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고 그 기준의 적용 사례도 일관적이지 못한 상태여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남용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유죄여부를 판별하는 핵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권력자로 하여금 명예훼손 처벌이라는 위협수단을 사용하게 만드는 유인동기가 될 수 있고, 국민들로서는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기본권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18건의 대법원 판례 중, 공인이나 공직자에 관한 사건이 7건, 종교나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3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력과 지배층에 대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으로 인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언론자유와 위축을 예방하고 명예훼손죄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 토 론 |

사 회 어 수 용
(대전중재부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2009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제1주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어 수 용 (사회자, 대전중재부장) : 제1주제 발표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특칙 조항인 17조의2는 개정 언론중재법 3장 1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조정과 중재에 대한 규정들이고, 4절은 소송에 대한 규정이다. 그런데 17조의2가 특별히 1절에 들어가 있다. 1절의 언론사 등에 대한 청구라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청구를 한 경우 언론사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발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조정의 경우에도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발표의 중요한 전제이자 주장 사항이 되는 내용이다. 이는 발표자의 주장이 해석론일 수도 있고, 해석론이 아니더라도 입법론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입법론적인 주장을 몇 가지 더 하셨는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인 포털뿐만 아니라 기사제공언론사까지 다 포함한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에 관한 이유와 상당성에 관해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알림기능, 포털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언급했다. 발제 내용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다.

일단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규율대상으로 들어 온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된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내용 등 주제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털 관련 부분까지 질문해도 무방하겠다.

윤 상 일 (서울제1중재부 위원) : 기사제공언론사가 다수의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다수의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뉴스서비스사업자 한 곳만을 골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지만 여타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개정 언론중재법의 입법취지를 보면 같은 기사내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뉴스서비스사업자, 즉 여러 포털 간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 상 원 (발제자, 서울제1중재부장) : 그에 관해서는 법에 어떤 규정도 없다. 피해자는 한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만으로 모든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싶겠지만, 법에는 다른 포털들도 피신청인으로 포함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간에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와 동일한 전제계약을 맺은 다른 포털들에게도 정정이나 반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윤 상 일 :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을 말씀하셨는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면 기사제공언론사는 피신청인이 되겠지만 다른 뉴스서비스사업자도 공동 피신청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여 상 원 :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포털 한 곳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당사자의 의사는 명백히 소를 제기한 포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은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포털과 나머지 포털 간의 관계까지도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기사제공언론사는 원천기사를 제공하고, 전제계약에 의해 포털은 그대로 옮겨 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넣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는 고려해 볼 수 있을지라도 그 나머지 포털까지 전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임 경 록 (서울제6중재부 위원) : 뉴스가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제공언론사와 같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뉴스를 다룰 때는 그만한 책임과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단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받아 중계해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뉴스서비스사업자를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유가 조정 결정 효력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여 상 원 : 근대 민사법의 원리는 과실책임주의였으나 산업사회가 되고, 사회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많이 생겼다. 요즘은 조그만 사고로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떤 시설물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더라도 그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보험이라는 것은 책임과 관계가 없지만, 보험에 들면 보험회사 잘못이 없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한다. 아주 오래 전에는 무과실책임주의였다가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과실책임주의로 되었다가 다시 현재는 무과실책임주의로 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포털이 기사작성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고, 전재계약에 의해 기사를 전재했을 뿐인데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언론보도의 사회적 과급력이 상당히 크고 한 번 언론에 보도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털이 사실 영향력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있겠지만, 전재계약에 따라 서비스하기 때문에 기사에 아무런 관여를 한 바 없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면 기계적으로 신는 것에 불과한데 똑같은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포털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관이 오판을 하면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직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지 않으면 공익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사제공언론사는 자신이 취재하고 보도하여 관여가 되었으니 책임을 져야하지만, 언론 조정과정에서 포털에게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포털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고, 자신들의 책임이 기사제공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중재부에서 참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임 경 록 :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에 실리면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보상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포털이 같은 기사를 부각시켜 반복해서 게재함으로써 그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고, 포털의 흥미 위주의 보도로 인해 피해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피해구제 목적에서 보았을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소 원칙적이고 법리적으로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신 용 석 (경기중재부장) : 발표자께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하여 무과실책임주의를 거론하셨는데, 현행법에서는 과실책임을 규정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과실책임에 있어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기사를 생산했다는 측면에서 뉴스제공언론사의 행위책임도 크지만, 포털이 종이신문보다 영향력이 커져가는 상황이고, 손해확대라는 측면에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포털의 책임범위가 오히려 커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행위책임과 결과책임, 손해배상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인 것 같다.

여 상 원 : 법률적인 것과 심리의 실질을 구별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 위원님과 신 부장판사 말씀이 맞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53812)을 보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서 유추하면 포털의 영향력이 기사제공언론사에 비해 크며, 피해가 확산되기도 하는 만큼 언론사와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전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계약 내용을 구하지 못해 발제문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계약상 포털은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하고 올리는 순서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언론사와 포털사의 책임을 갈게 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 놓은 것이다. 법률적으로 맞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 실무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 은 실 (KTH파란닷컴 미디어서비스팀 뉴스파트장) : 포털사는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를 편집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거나 선택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포털은 언론사가 생성한 기사를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 기사로 인해 피해자가 생겨 소송이 제기되거나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었을 때 포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들어오는 기사 모두 검열을 해야 하고 검열되지 않은 기사는 서비스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포털은 소수의 검증된 언론사만 선택해 계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검색 서비스에서도 많은 뉴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기사를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 동 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다. 아웃 캐스트라고 해서 제목을 클릭하면 신문사 홈페이지로 가는 서비스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포털이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묻고 싶다.

여 상 원 :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포털 자체에 기사를 싣는 방식, 포털이 링크만 하는 방식, 검색을 통해 기사 저장장치에서 내용을 불러내는 방식 등이 있는데 모두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포털이 기사로 가는 문을 열어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 동 훈 : 뉴스 캐스팅은 기사를 직접 레이아웃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되는가.

여 상 원 : 포털에 올린 기사와 링크된 기사와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 의문이다. 포털 때문에 그 기사를 볼 수 있게 된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김 현 성 (NHN 법무실장) :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인데, 뉴스 캐스트, 네이버 홈과 같이 저장 공간에 있는 것, 검색 등이 있다. 뉴스 캐스트와 검색 뉴스는 알고리즘에 의해 기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저장하고 있는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뉴스제공사업자에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포털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 하나 정정보도청구 알림 등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언론사로 넘어가는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 통보만 하면 되고, 저장하는 기사에 대해서만 포털이 자체적인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여 상 원 : 개인적으로는 링크된 기사는 포털이 알림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은 통보만 하는 것으로 끝이고, 기사제공언론사는 통보를 받게 되면 피신청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17조의2에서 기사제공언론사로서 알림표시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김 현 성 : 판례에서 포털이 문제된 것은 레이아웃, 활자를 크게 강조한 것 등을 편집행위로 본 것이다. 지금의 문제점은 신문사에서 틀을 만들어 보낸 것을 네이버에서 그대로 싣고 있고, 클릭하면 신문사로 넘어가는 시스템인데도 네이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포털사는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점은 구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 재 일 (대전중재부 위원) : 저널리즘 차원의 핵심 쟁점인 포털의 편집 책임 또는 뉴스서비스의 결과적 책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포털에서 제목 배치 등의 편집행위를 했지만 현재는 편집을 전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클릭할 수 있는 게이트를 열어준 것만으로도 편집이라고 본다. 다수의 독자들에게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편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포털은 자신들의 미디어 정체성을 말할 때, 언론사는 도매업자고 포털은 소매업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포털은 대형유통업자이고 언론사는 납품 업체다. 대형할인점에서 산 제품이 불량품이면 그 대형할인점에 책임을 묻지 제조업자에게 항의하지 않는다. 포털 입장에서선 단지 게재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이견 모순이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이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

사하는 저변에는 뉴스서비스를 함으로써 얻는 공적 공신력이 크다고 본다. 결과적으로는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은 정 (NHN 뉴스서비스팀 차장) : 뉴스캐스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네이버는 언론사 측에 공간을 제공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하게 해줄 뿐이고 그것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트 공간에 올라온 언론사의 기사를 판단하거나 제재하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과정 등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하루에 네이버에 들어오는 기사가 2만 건이 넘는다. 접속자가 많아 피해확산의 우려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실시간 검색어 등의 노출을 통해 모니터링 되지 않은 기사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포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있겠지만, 언론사에서 전송하는 기사는 포털이 수정, 삭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점 등 포털사업자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제2주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어 수 용 : 출판물과 관련한 명예훼손죄의 법률적인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 그 범위가 넓어 약간 요약해 보면, 우선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누어 설명하셨고, 특히 형사문제에 주목해 형법 307조에 규정된 일반 명예훼손죄를 언급하면서, 이 경우에는 310조에 의해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씀하셨다. 반면 309조에 언급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10조의 진실성, 공익성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실성과 상당성,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되지 않는 쪽으로 해석을 해왔다는 취지로 발표하셨다. 또 여러 판례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더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신 용 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 비방의 목적을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하고, 그것은 언론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발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타당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전제되는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명예훼손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에 비해 손해배상을 받기 쉬운 민사사건이 많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검사가 일단 한 번 걸러서 기소하기 때문에 불기소되는 사건이 훨씬 많다. 기소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민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율도 상당히 낮다. 전체 사건의 1%도 안 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30%에 해당하는 무죄율은 굉장히 높은 무죄율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사건마다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개별 사건의 상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방식이 헌법재판소와는 다르다. 개별사건마다 기준이 다 있을 수 없고, 그 사건에 대한 기준이 보이지 않으면 하급심 판결문의 살펴봐야 한다. 이미 하급심에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준 택 (SK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서비스팀장): 포털이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다.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경우, 기사를 쓴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후속보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 예로 최근 한 신문사는 자사가 보도했던 중국산 콘돔에 탈크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자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후속보도를 내보내는 등 나름대로 기사의 내용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취했다. 이처럼 언론사는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손해배상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포털은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스스로 보도에 대한 확인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털이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면서 일반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이 보도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포털만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린다. 포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기사에 대해서 수정,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상당성과 진실성, 공공성을 입증을 해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당 명예훼손 소 제기자가 아니라 해당 언론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포털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포털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뤄질 경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 준 석 (Daum 고객센터서비스기획팀장): 최근 피해구제에만 국한된 법개정들이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취하게 되는 임시조치에 앞서 적절한 소명이 없다보니 충분히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와 관련해서도 소명이 충

분하지 않아도 포털은 신청을 받으면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기 따라서는 옳은 기사에도 표시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대기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터져서 포털에 기사가 수백 건 전재가 되면 해당 기사마다 신청이 제기될 것이다. 대법원 가서도 번복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 이슈인데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로 인해 신청만으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남용 차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여 상 원 : 알릴 표시는 언론중재법에 특칙으로 신설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차이점을 말하자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기사 삭제는 소명이 있어야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의한 알릴 표시 이행은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의 표시의무는 청구가 있다는 자체를 표시를 하는 것이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언론중재법이 소명 없이 청구만으로 표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재 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1964년 설리번 사건 이후 각 주의 명예훼손법을 통해서도 형사적으로 문제된 경우는 50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명예훼손은 형사적인 해결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은 정서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부분도 공 부하면서 가장 헛갈리는 부분 중 하나였다. 일단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점과 관련하여 진실 하면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은 우선 진실성을 가지고 볼 것인데 진실하다면 굳이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발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장 호 순 (발제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일단 세계인권단체 데이터를 보아도, 명예훼손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후진적인 것이 맞다.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것은 분명하다. 민주화가 될 수록 그런 부분들을 상호토론이나 반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안 된다면 민사상의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 부장판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고발이 상당히 많다. 논문 작성을 위한 판례를 준비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명예훼손 고발사례만을 모아보았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수와 진보 신문사가 갈려서 서로 고발한 경우가 많았다. 보수와 진보 그룹 간에도 서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선거관련 후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고발한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토론하고 반론하고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고 검찰에 가서 처벌해 달라고 한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다. 법의 문제 이전에 사회적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문화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사용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미네르바,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 결국 그 희생자가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을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소를 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지 절반의 국민만 수궁하고, 절반의 국민은 수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부, 법조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법원에서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적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에 도달하게 된 사실과 법적 기준을 당사자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히 취약하다. 그것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수궁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또 그러한 판결이 나와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했을 때, 그 기소는 부당하다 또는 적절하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일단 위법성 조각사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을 해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입증되면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언론이 진실하게 공익을 위해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국가에 의해 처벌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혹시 비방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언론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검찰의 기소를 국민이 불신하거나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개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보도를 탄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궁극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대법원은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한 큰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판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게 해 주는 것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비방할 목적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한하는 요소로 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고의라는 것과 법률적으로 말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여서 판단하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어렵다. 객관적인 사실들은 판단하기가 쉽지만 비방할 목적, 가해할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를 넘어서 가해의 목적까지 있다고 인정하는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는 나름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목적범에서 보면 미필적 목적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확정적인 목적은 없지만 추론으로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주관적 요소이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두 사람의 관계까지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발표자께서는 여러 가지 분석은 해주셨는데 비방할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은 내려주시지 않은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장 호 순: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법원에서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의 판례에서는 진실성과 상당성만 입증이 되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도 일정 정도 충분히 일관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판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진실 여부가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왜 진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어떻게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설명 없이 그냥 비방할 목적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만 나오는 판례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학자들도 주장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1964년에 미국 설리반 판결에서 나온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이 어떻게 보면 비방의 목적과 굉장히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냥 보도한다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개의치 않고 써버리는 것, 이 정도는 비방할 목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상황과 같이 판단해 보면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큰 기준을 만들었다. 그것을 일관성 있고 세밀하게 각 사안별로만 적용해 준다면 일반 국민과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어 수 용: 처벌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면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진실성, 상당성, 공익성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모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보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은 판결이 나오면 언론사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대법원 판결에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발표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

김 상 호 (중앙일보 사회부 차장):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입찰과 관련한 건설비리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동안 K건설로 썼다. 그러나 방송, 다른 신문에서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계속 익명으로 써야하는가 하는 곤란함을 느꼈다. 나중에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더라도 정상참작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위안을 삼고 실명보도를 했다.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명예훼손 부분에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재 형 (Daum 미디어사업팀 차장) : 정정표기 등은 가이드 라인을 만들거나 진행 과정에서 정리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포털같이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언론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 편집에 의한 여론형성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으면 한다. 미디어 다음 뉴스서비스 쪽에서 언론사 기사를 다 볼 수 있도록 계약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80개 사 정도 된다.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는 사실상 링크만 서비스 하고 있고, 이렇게 검색 서비스만 되는 언론사는 약 500개 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편집을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은 80개 사와 관련된 것이다. 뉴스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여지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론사의 계약 조건과 수도 달라질 수 있다.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링크 서비스만 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편집과 함께 유통의 역할에 대한 책임까지 부과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지금 네이버가 하는 뉴스캐스트와 다음의 열린 편집도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점이 있을 것 같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모든 편집을 할 수 있게 프레임을 뚫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것이 단지 네이버의 탑에서 보여지는 경우이다. 다음이 하고 있는 블로그 뉴스는 이용자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기사 중요도를 따져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서비스인데 단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편집 주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다음의 경우는 이용자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뉴스캐스트는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자체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서비스사에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유 종 현 (MBC 영상취재부장) : 원론적이지만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과 그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컴퓨서브(Cubby v. CompuServe) 사건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을 지지 않았고, 프로디지(Stratton v. Prodigy)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여 책임을 졌다. 미국이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만끽하는 표현의 자유 국가가 된 것은 있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마리안법(Good Samaritan)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저작권법에 온라인서비스의 책임 면책에 관한 조항이 있다. 우리는 개별법에만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법원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서 판례법으로 상당히 발전해 왔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두 미국 판례가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신 용 석: 이 자리에는 기자, 언론학자도 있고 중재위원은 기자, 학자, 판사 등의 전현직자로 구성되어 있어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다. 책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언론중재법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제도가 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 중 책임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손해배상밖에 없다.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면 당연히 정정을 해야 하고, 반론보도는 보도 대상이 된 사람에게 반론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추후보도는 무죄판결이 난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의 특이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포털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뉴스캐스팅 등에서 포털이 직접 한 것은 없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불법행위는 행위책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한 것인지 따져보고, 만약 링크만을 한 경우는 링크 기사 자체로 명예훼손인 경우는 당연히 포털도 책임이 있겠지만,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사를 생성한 기사제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포털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책임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책임이라는 말을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도에 계속 쓰게 되면 의사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성 동 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협력팀장): 질문 가운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참고 말씀을 드리겠다. 포털에 정정보도 신청이 들어와서 뉴스제공 언론사에 통보가 됐는데, 같은 기사를 여러 포털들에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포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다. 기사 제공 언론사가 포털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기사를 제공한 다른 포털들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도록 했다. 기사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에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통보를 받은 포털사들은 알림표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심리과정에 있어서의 피신청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겠다.

어 수 용: 장시간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 마지막 마무리 순서로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께서 총평의 말씀을 해주시겠다.

최 양 호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두 분의 발제와 토론에 대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다. 언론학자, 언론중재위원, 언론 현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포털에서 나오신 분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이니 시각도 매우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널리즘 시각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포털은 산업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중재위원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

는 이용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법리적인 결정을 할 때, 법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어떤 손해가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렇게 복잡하다고 한다면 포털 서비스의 모든 뉴스 검색 서비스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결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모든 법리적 해석이나 사회적인 판단을 할 때 이용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였으면 한다.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오늘 발제를 해 주신 두 분, 사회를 맡아 주신 어수용 부장님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해 주신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한 언론중재위원회 관계 직원도 수고가 많았다.

오늘 발제와 토론이 유익했다는 생각이다. 우선 장호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문제는 아주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너무 광범위 하게 인정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소중한 개인의 명예,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취급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결국 양 쪽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인의 순수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다. 사건 중에는 순수한 개인의 사고, 사건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많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너무 자주 보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특정을 하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 보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공인 문제를 많이 언급한다. 공인, 공적 관심사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보면, 공인, 공적 관심사는 전체주의 정권에서 많이 들고 나왔다.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단체의식 등, 이런 배경에서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 공익이나 공적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실무자들이 이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좀 더 소상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대단히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한 가지는 대법원은 사건이 너무 많다. 1970년대에 조사했던 통계를 보면 영국의 대법원은 1년에 취급하는 사건이 5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50여 건의 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 아주 상세하게 논의가 되고 그러한 논의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건이 너무 많다. 자세한 논리를 제시하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 본다. 둘째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비추볼 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에서는 그 이야기가 타당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사건의 내용이

조금만 달라지만 과연 그 기준이 타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이 조심스럽다. 대법원은 그러한 기준을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명제로 제시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여상원 부장께서 언론중재법 17조의2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실무진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작년에는 미디어 관련법들이 일괄해서 통과되지 못 했고, 금년으로 넘어와서 얼마 전 일부 미디어법이 타결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미디어 관련법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와서 올해 1월에 먼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디어 관련법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여야 간, 국민 간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포털 뉴스를 언론 중재와 조정의 대상으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래서 여야 간의 심한 대립 속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 안만이 따로 빠져 나와서 결국 성공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여야 대립 논란 속에서 개정되다 보니 구체적인 각론의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 17조의2 이 조문 하나만 넣고 후속 조치에 관한 조문은 빠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 그리고 학계와 실무자들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해석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법이 입법이 되면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이처럼 문제가 많은 조문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제공한다. 당장 포털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컨대 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남발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소명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앞서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헌법재판소가 생겼을 때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생기므로 해서 우리나라 헌법 교과서가 두 배 이상 커졌다. 헌법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 헌법 관련 연구할 자료들이 많이 생겨서 헌법학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 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은 법률학, 나가서 우리 법률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문이 하나 생기므로 해서 우리 언론학회, 언론법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것이다. 언론학회 또 언론법학회에서는 좋은 연구 소재가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털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언론학회, 언론법학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충분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열기를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다. 토론내용은 중재위원회에서 잘 정리해서 학계나 실무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다. 오늘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27.
제정법시행 : 2005. 7. 28.
일 부 개 정 : 2009. 2. 6.
개정법시행 : 2009. 8. 7.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1.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9.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1.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3.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

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개정 2009.2.6>)

①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2.6]

제6조 (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2.6>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2.6>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2.6>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 (중재부)

-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신설 2009.2.6>

⑤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따라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해당 중재부를 보충한다. <신설 2009.2.6>

제11조 (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개정 2009.2.6>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개정 2009.2.6>

③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⑦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개정 2009.2.6>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절 조 정

제18조 (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 (결정)

-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9.2.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09.2.6>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절 중 재

제24조 (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④삭제 <2009.2.6>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개정 2009.2.6>)

①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9.2.6>

②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2.6>

제4절 소 송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⑥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6>

⑦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2.6>

⑧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2006. 6. 2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7조 (재판)

①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

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28조 (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개정 2009.2.6>)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 (손해의 배상)

①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 (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개정 2009.2.6>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⑦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⑧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3조 삭제 <2009.2.6>

제4장 벌 칙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9.2.6>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부 칙 <제942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매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매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제2조제10호의 언론사”를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397 - 3114 언론피해상담 : 02) 397 - 3000, 3100, 3110 / 팩스 :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 051) 759 - 7083~4 / 팩스 :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53) 763 - 0020~1 / 팩스 :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 062) 676 - 0360~1 / 팩스 :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 042) 525 - 0778~9 / 팩스 :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6층 전화 : 031) 211 - 9027, 9022 / 팩스 : 031) 212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255 - 2878~9 / 팩스 :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번호사빌딩 404호 전화 : 043) 286 - 8083, 8081 / 팩스 :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288 - 0010, 0981 / 팩스 :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263 - 1787, 1780 / 팩스 :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722 - 3328, 3352 / 팩스 : 064) 726 - 3201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100, 3110 / FAX : 02)397-3089